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중협박죄 법정형 상향 및 모방범 가중처벌〉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852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2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3
가. 공중협박죄 입법경과 및 해외 입법례	3
나. 법정형의 헌법적 기준 개관	6
다. 검토의견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9. 10.
3. 회 부 일: 2025. 9.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협박죄의 범정형을 상향하고, 모방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여 반복되는 사회 불안을 줄이고자 합니다.

최근 「형법」 개정으로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었음에도 범죄 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낮고, 공중협박의 모방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4개월간 공중협박죄는 72건 발생했으며, 검찰에 송치된 37명 중 구속된 경우는 단 4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모 백화점 폭과 협박 이후 이를 그대로 따라한 추가 협박글이 온라인에 게시되는 등 모방범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공중협박죄의 범정형을 상향하고, 모방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공중협박으로 인한 위협과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을 한층 더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16조의2).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i) 공중협박죄의 처벌 수준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안 제116의2제1항), ii) 모방범에 대해서는 공중협박죄 법정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u>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 ----- ----- <u>10년-----5천만원</u> -----.
② (생략)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③ <u>다른 사람(공범은 제외한다)이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협박 수단, 협박 대상, 위해 수법 또는 위해 장소를 모방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
③ <u>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u>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u>

처벌한다.

-----.

개정안은 공중협박죄의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모방범을 가중처벌 함으로써, 사회 일반에 공포심을 주고 공공의 안녕을 저해하는 공중협박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가. 공중협박죄의 입법경과 및 해외 입법례

「형법」상 공중협박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살인예고 등 공중협박행위가 사회적 불안과 모방 범죄를 유발하는 과급적 위험성을 지님에도, 기존의 협박죄¹⁾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위협행위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공중협박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5년 3월 18일 도입되었음.

관련 해외입법례는 다음과 같음.²⁾ ① 미국의 경우 뉴욕주,³⁾ 버지니아주, 일리노이주, 텍사스주, 펜실베이니아주 등의 형법에 일반 공

1)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③ (생략)

2) 각국 주재 국회입법관 조사자료 및 법무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3) 「뉴욕주 형법」 §490. 20.[테러협박]

1. 공중 일반을 겁먹게 하거나 협박할 의도, 협박이나 위협을 통해 정부기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의도, 또는 살인, 암살, 또는 납치를 통해 정부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지고 특정 범죄(살인, 방화, 납치 등)를 범하거나 범해지도록 할 것임을 위협함으로써 특정 범죄에 대한 합리적 기대나 임박한 실행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킨 사람은 테러협박죄에 처한다.

2. 이 조에 따른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해당 범죄를 실행할 의도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대상자에게 위협이 도달하지 않았다는 항변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죄는 D급 중범죄에 해당한다. ※ D급 중범죄 : 징역 7년↓

중을 대상으로 하는 협박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음.

② 독일 형법은 ‘개인의 자유에 관한 죄’ 항목(제18장)의 일반 협박죄(1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 외에 ‘공공질서에 대한 죄’ 항목(제7장)에 ‘범죄위협에 의한 공공평온교란죄’(3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를 규정하여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상당한 방법으로 소요·강간·살인·상해 등의 범죄행위를 범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음.⁴⁾

③ 오스트리아 형법은 ‘자유에 관한 죄’ 항목(제3장)의 일반 협박죄(1년 이하 자유형) 외에 ‘공공의 평온에 관한 죄’ 항목(제20장)에 ‘대중협박죄’(3년 이하 자유형)를 규정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침해에 대한 협박으로 국민 또는 다수의 사람을 공포와 불안에 빠뜨리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⁵⁾

4) 「독일 형법」

제7장 공공질서에 대한 죄

제126조 (범죄위협에 의한 공공평온교란) ①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상당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를 것이라고 위협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제125조a 제2문 제1호 내지 제4호의 소요

2. 제177조(성적강요, 강간)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178조(성적강요, 강간치사)의 성적자기결정에 관한 범죄

3. 모살(제211조), 고살(제212조), 인종학살(국제형법 제6조), 반인도적 범죄(국제형법 제7조), 전쟁범죄(국제형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2조)

4. 위험한 상해죄(제224조), 중상해죄(제226조)

5. ~ 8. (생략)

②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자신의 확정적 인식과 달리 제1항에 규정된 위법행위의 실현이 임박한 것처럼 기망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제18장 개인의 자유에 대한 죄

제241조(협박) ① 타인에 대하여 타인 또는 타인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중죄의 실행을 협박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5) 「오스트리아 형법」

제20장 공공의 평온에 관한 죄

제275조(대중협박) ① 생명, 건강, 신체의 불가침성, 자유 또는 재산에 대한 침해를 고지한 협박으로 국민 또는 다수의 사람을 공포와 불안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3장 자유에 관한 죄

제107조(위험한 협박) ① 타인을 공포와 불안에 빠지게 할 목적으로 위험하게 협박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④ 스위스 형법은 ‘자유에 관한 죄’ 항목(제4편)의 일반 협박죄(3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 외에 ‘공공의 질서에 대한 죄’ 항목(제12편)에 ‘일반 대중에 대한 공포심 또는 불안감 조성’(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여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협을 위협하거나 가장하여 대중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⁶⁾

다만,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의 경우 공중협박 행위 자체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프랑스의 경우 테러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의 안녕을 심각하게 해치려는 목적으로 구체적인 행위에 착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함. 영국의 테러법(Terrorism Act 2000)⁷⁾ 또한 일반 대중의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의 위협 또한 테러행위로 포함하고 있으나 정치적, 종교적 또는

6) 「스위스 형법」

제12편 공공의 질서에 대한 죄

제258조(일반 대중에 대한 공포심 또는 불안감 조성) 누구든지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협을 위협하거나 가장하여 대중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제4편 자유에 대한 죄

제180조(협박죄)

1. 누구든지 심각한 위협을 통하여 타인을 공포심 또는 불안감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7) 「영국 테러법」(Terrorism Act)

제1조 테러행위 정의

(1) 동 법률에서 정의하는 “테러행위”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행위의 실행 또는 위협임;

- (a) 아래 (2)항에서 정하는 행위,
- (b) 정부 또는 국제적 정부기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일반 대중의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의 실행 또는 위협,

그리고

- (c) 정치적, 종교적, 또는 이념 목적달성을 위한 행위의 실행 또는 위협

(2) 동 항에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

- (a) 타인에 대한 심각한 폭력행위
- (b) 타인의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행위
- (c) 행위자를 제외하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
- (d) 일반 대중의 건강 및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 또는
- (e) 전자통신 시스템을 심각하게 침해 또는 방해하려는 행위

제5조 테러행위 준비

(1)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테러행위 준비에 가담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

- (a) 테러행위를 자행하거나;
- (b) 타인의 테러행위를 돕는 행위;
- (2) 위 (1)항은 행위자의 목적이나 준비행위가 어떤 특정한 테러행위 또는 일반적인 테러행위와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됨
- (3) 동 조항에 따라 유죄판결 받은 자는 종신형에 처함.

이념 목적 달성을 위할 것과 준비행위가 있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음. 일본 형법은 불특정다수에 대한 살인·방화 등을 예고한 공중협박에 관한 별도 처벌규정은 없으며, 사안에 따라 형법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함.

나. 법정형의 헌법적 기준 개관

법정형의 입법 분야에서 입법자를 구속하는 헌법상의 지침으로는 비례원칙, 형벌체계 상 정당성과 균형성 및 평등원칙, 명확성원칙을 들 수 있음.⁸⁾

i) 비례원칙은 법정형을 포함한 형사입법의 목적과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투입된 수단이 정당해야 한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입법을 통하여 투입하는 수단이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해야 한다는 적합성 원칙, 투입하는 수단이 국민에게 가장 피해를 적게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 원칙, 입법을 통하여 추구하는 목적의 가치와 법익에 대한 제한의 강도가 비례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균형성 원칙 등을 내용으로 함.⁹⁾¹⁰⁾

ii) 형벌체계 상 정당성과 균형성 및 평등원칙¹¹⁾은 법정형을 가

8) 이진국, 합리적 법정형의 입법 방안, NARS정책연구용역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16쪽

9) 이진국, 앞의 책, 16쪽

10) 형벌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와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6헌가13 결정례).

11) 입법취지에서 보아 중벌(重罰)주의로 대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의 실태와 죄질의 경중,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 처벌규정의 보호법익 및 형벌의 범죄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전체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그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중하는 입법의 경우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체계 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서는 아니되며,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함.

특히, 형사입법에서는 균형성 원칙이 행위규정과 제재규정 간의 비례관계를 심사대상으로 삼게 되며, 입법자가 신설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범죄구성요건에서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정형이 비례관계에 서 있는지가 균형성 원칙의 심사대상으로 됨.¹²⁾ 객관적으로 법정형을 범죄의 추상적 불법성에 비례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법정형에 대한 균형성 원칙의 요청에 위반될 경우 책임주의¹³⁾에 위배되어 위헌으로 된다는 실천적 의미를 지니게 됨.¹⁴⁾¹⁵⁾

다. 검토의견

1) 공중협박죄 법정형 상향 관련

공중협박죄가 「형법」에 도입된 이후에도 공중협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공중협박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공중협박행위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인정됨.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함으로써 입법재량권이 헌법규정이나 헌법상의 제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헌법에 반한다.(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6헌가13 결정례).

12) 이진국, 앞의 글, 23쪽

13)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14 결정례)

14) 이진국, 앞의 글, 24쪽

15) 형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지 아니하고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비례성을 갖추어야 하고(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 전체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하지 아니할 것이 요구되며(형벌체계상의 균형성과 평등원칙), 이에 위반되는 법정형을 규정한 조항은 형벌법규의 법정형에 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6헌가13 결정례).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형법」에 규정된 구체적 법정형은 개별적인 보호법익에 대한 가치체계를 표현하는 것으로서,¹⁶⁾ 개정안에 따라 강화하려는 공중협박죄의 법정형 수준이 관련 범죄들의 법정형 수준과 비교하여 형벌체계상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특히, 개정안에 따를 경우 공중협박죄의 법정형이 살해 대상자를 확정하여 살인을 준비하는 살인예비·음모죄의 법정형이나 다중이 집합하여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¹⁷⁾의 폭행, 협박 또는 손괴행위를 하는 소요죄¹⁸⁾의 법정형과 유사하게 되는 점에서 공중협박죄의 죄질과 살인예비·음모죄 및 소요죄의 죄질을 비교하여 적절한 법정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중협박 행위 관련 법정형 비교>

구 분		구성요건	법 정 형
공중협박죄 (「형법」 제116조의2제1항)	현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안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협박 (「형법」 제283조제1항 ¹⁹⁾)		사람을 협박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살인예비·음모 (「형법」 제255조 ²⁰⁾)		살인을 예비 또는 음모	10년 이하 징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7조 ²¹⁾)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 ²²⁾		공포심·불안감 유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16)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바354 결정례

17) 장윤식, 각칙 1, 주석형법 제5판, 151쪽

18)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둘째, 형사입법은 불법에 대한 제재 수단이나 기본권 침해와 직결되는 점에서 다른 입법사항보다 엄격하고 세밀하게 평가될 필요가 있는바,²³⁾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그 법정형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 공중협박죄에 대한 입법 평가와 함께 양형기준의 마련, 공중협박범죄의 엄격한 처벌에 관한 안내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2) 공중협박 모방범 가중처벌 관련

살인 예고 등 공중협박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수 발생할 경우에는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게 되는바, 이를 가중처벌하여 공중협박행위를 모방한 범죄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인정됨.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모방범에 대하여 형을 2분의 1 가중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책임주의의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 19)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20)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1)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23) 형사입법평가의 원칙과 기준으로 ① 형벌의 최후수단성(ultima ratio)과 비례성의 원칙, ② 책임원칙의 준수, ③ 체계정합성과 집행가능성이 제시된다.(이보라·김면기, 형사입법과 법원의 판단: 'N번방 방지법' 중 소지죄에 대한 형사입법평가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36권제3호, 351쪽)

죄와 형벌의 균형은 헌법질서에 기초한 그 시대의 가치체계와 일치되어야 하고, 특별한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형벌의 양은 책임의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데,²⁴⁾ 모방범을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것은 범죄자의 범죄행위와 그 결과의 불법성을 근거로 법정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²⁵⁾ 범죄의 예방만을 목적으로 형을 가중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점에서 책임주의 원칙의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법적 제재가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의 소재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자기책임²⁶⁾의 범위를 벗어나는 제재가 되는바,²⁷⁾ 다른 사람의 공중협박 범죄행위를 모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위자의 불법성과 책임이 가중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자기책임의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둘째, 모방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공중협박 범죄를 예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모방범죄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대중매체의 개선을 통한 모방범죄 억제, 가정에서의 적절한 훈육을 통한 자기통제력의 강화,

24) 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3헌가12 결정례

25)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일반적으로 범죄는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 즉 행위반가치(行爲反價値)와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의 발생, 즉 결과반가치(結果反價値)라고 말할 수 있으나, 여기서 범죄를 구성하는 핵심적 징표이자 형벌을 통해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행위에 나아간 것’, 즉 행위반가치에 있다.”(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6 결정례)

26) “자기책임의 원리는 이와 같이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2헌가27 결정례)

27)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마40 결정례

모방범죄자의 특성에 따른 개별적 대응²⁸⁾이 필요하며, 특히 공중협박범죄의 상당수가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지는 점에서²⁹⁾ 모방범죄 청소년의 행동수정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³⁰⁾ 등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청소년의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정책적인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셋째, 가중처벌 대상 모방범죄의 구성요건이 범죄예방적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개정안은 ‘공범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공중협박범죄’를 ‘6개월 이내’에 모방하여 저지른 자를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i) 최초 발생한 공중협박범죄와 관련성이 없는 자가 저지른 공중협박범죄의 행위반가치가 공중협박범죄의 정범과 공동으로 또는 그 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가 추가로 저지른 공중협박범죄의 행위반가치보다 크다는 평가를 전제로 하는 점에서 구성요건 주체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고, ii) 모방범죄로서 공중협박행위가 사회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는 모방 대상이 살인, 상해 등 현실적으로 발생한 범죄사건인 경우가 공중협박범죄 자체를 모방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점에서 모방 대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iii) 짧은 기간에 다수의 공중협박행위가 발생하여 사회적 평온을 크게

28) 남재성, 모방범죄의 유형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6권제3호, 192-197쪽

29) 공중협박죄 신설의 배경이 된 2023년 홍기난동사태 당시, 같은 해 8월 6일까지 살인예고 글게시로 전국에서 검거된 54명 중 29명이 10대 청소년으로 확인됨.(김봉수, 소년예고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95호, 39쪽)

30) 남재성, 앞의 글, 196쪽

해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려는 경우에도 그 기준으로 ‘6개월’이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리하면, 개정안은 공중협박범죄와 모방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공중협박행위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인정됨.

다만, 공중협박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살인예비·음모죄 및 소요죄의 법정형 및 죄질과 비교하여 형벌체계상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와 신설된 지 1년여 정도 지난 공중협박죄에 대한 입법평가와 함께 양형기준의 마련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중협박 모방범의 가중처벌 관련과 관련해서는 행위자의 자기책임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청소년의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정책적인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56